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도병두 의원·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,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- 4) 실태조사 및 환수조치(안 제6조 및 제7조)
- 5)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간병인”에 대한 정의와 “간병비”를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규정함

나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)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
-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규정함  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 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 
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라) 실태조사 및 환수조치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
마)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# 3) 검토 의견

○ 장기 노인환자 등에 대한 간병인은 환자를 돌보는 필수적인 존재이며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하루 약 12-15만원, 한달평균 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심각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
-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필요한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 도입,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집행부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